/사진=김현정자해 위험에 수갑을 채우고 응급 입원 절차를 위해 구급차로 호송하던 경찰관을 폭행한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업무방해,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2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8월30일 오전 강원 춘천에 있는 주거지에서 병원으로 이동하는 119구급차량 안에서 호송 임무를 수행하던 경찰에게 침을 뱉고, 욕설하며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경찰은 당시 A씨가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려 시도하고, 자신의 혀를 깨무는 등의 행위를 해 자해 위험이 크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보호 목적으로 수갑을 채우고, 응급 입원 절차 진행을 위해 119구급차량으로 A씨를 호송 중이었다.조사 결과 A씨는 호송하던 경찰이 수갑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앞서 지난해 8월14일 새벽 A씨는 남편과 전화로 다투다 화가 나 남편이 있는 피시방으로 찾아가 다퉜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키보드를 책상에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56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약 15분간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다.신 판사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과 경찰관과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재물손괴 피해가 보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